

# 사회봉사활동 운영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①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의 사회봉사활동 장려를 통하여 사회적 의무를 완수하고,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이규정은 학교법인 루터교학원 정관 제90조의 3(사회봉사단)에서 정한다.

**제2조(사업구현)** 본교의 교육이념인 '종교개혁 정신과 홍익인간의 이념 구현'을 기여하는 동시에 본교 구성원이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의 문화를 정립시키는데 있다.

**제3조(연계운영)** 사회봉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사회봉사단(이하 "봉사단"으로 한다)에서 총괄, 운영하되 봉사활동의 영역에 따라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전공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. (2020.2.25.개정)

## 제 2 장 봉사활동

**제4조(구성원봉사활동 지원)**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.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- ①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봉사활동
- ② 교직원의 봉사활동
- ③ 학생자치기구 및 단체의 봉사활동
- ④ 기타 총장이 정하는 봉사활동

**제5조(지역사회 봉사활동 연계)** 노인, 장애인, 아동 등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기관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

**제6조(해외 봉사활동)** 본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봉사 및 문화교류로 국제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7조(교.직원 봉사영역)** ① 교원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교원 업적평가 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, 관리한다.

1. 교원은 매 학년도 교원 업적평가 정기평가 시 본인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한다.

② 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, 관리한다.

1. 직원은 매 학년도 직원 근무성적 정기평가 시 본인의 사회봉사활동 실적

을 제출한다.

### 제 3 장 사회봉사단

**제9조(지원)** ① 봉사단은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관한 제반 행정 업무를 총괄, 지원한다.

② 봉사단은 필요한 보조 업무인력을 둘 수 있다.

**제10조(단장)** 단장은 총장이 제청하고, 이사장이 임명하여 봉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**제11조(직무)** 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- ① 사회봉사 중.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
- ② 국내.외 사회봉사활동 계획수립과 프로그램 개발
- ③ 봉사활동의 대내.외 기관 연계 운영 업무
- ④ 사회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사회봉사에 관한 중요 사항
- ⑥ 사회봉사단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환류

**제12조(학생지도)** 봉사단 및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질 높은 사회봉사가 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에 대하여 단체 및 기관과 조정하고 협의하여 봉사활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
### 제 4 장 운영위원회

**제13조(운영위원회)** 봉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**제14조(구성)** ① 봉사단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교내.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교학처장, 디아코니아교양대학학부장, 신학과장, 상담심리학과장, 사회복지학과장, 언어치료학과장, 평생교육원장, 교학팀장, 총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 (2019.9.4.개정)

**제15조(위원장의 직무)**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**제16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신규 인사 명령이 있지 아니하는 한 연임된 것으로 본다.

1. 위원장의 임기는 단장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17조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사회봉사 중.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② 사회봉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③ 사회봉사활동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④ 사회봉사 업무의 평가와 개선책에 관한 사항
- ⑤ 사회봉사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⑥ 기타 사회봉사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**제18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 5 장 기 타

**제19조(재정)** 봉사단의 재정은 본교의 예산 및 개인이나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기부된 후원금으로 운영한다.

**제20조(회계연도)** 봉사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**제21조(운영지침)** 사회봉사활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[전문 개정]

[제목 변경]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